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재 신기술 활용 안내

1. 관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1836(2022.8.18.) 호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해 방재 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방재 신기술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방재 신기술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신기술 상세 내용은 한국방재협회 누리집(www.kodipa.or.kr) 참고

붙임 방재 신기술 지정 현황 1부. 끝.

